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66

발의연월일: 2020. 11. 6.

발 의 자:김도읍·추경호·김정재

박덕흠 • 윤한홍 • 정동만

조수진 · 이헌승 · 태영호
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전상비의약 품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수 없는 경증·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을 구하기 위하여 응급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저하시킨다는지적이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3 및 제69조의4).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3(심야약국의 지정·운영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(이하 "심야약국"이라 한다)을 지정 할 수 있다.
 - ②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 다.
 - ③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- 2. 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3.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⑥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수할 수 있다.
- ⑦ 심야약국 지정의 기준·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식품의약품안전처장"을 "식품의약품안 전처장, 시·도지사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1의2.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야약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은 제21조의 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야약국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

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심야약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1조의3(심야약국의 지정·운영
	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	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
	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
	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
	매하는 약국(이하 "심야약국"이
	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	②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
	약국개설자는 시·도지사 또는
	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건복지
	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
	<u>청하여야 한다.</u>
	③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
	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
	로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
	<u> 여야 한다.</u>
	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
	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
	의 범위에서 심야약국 운영에
	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
	<u>수 있다.</u>
	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
	구청장은 심야약국이 다음 각

-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미달하게 된 경우
- 3.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
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
- ⑥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 된 경우 해당 심야약국에 지급 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⑦ 심야약국 지정의 기준·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 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다.

제69조의4(시정명령) 보건복지부 장관,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</u>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약국개설 자,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, 수입자, 의약품 판매업자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 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1. (생 략) <신 설>

2. ~ 4. (생 략)

제69조의4(시정명령)
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</u>
지사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
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
<u>경우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